

전주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73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와이

담당변호사 이종현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8.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19. 5. 접수 제420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5.경 (주)E의 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258900호로 확정된 판결에 기한 양수채권은 2021. 3. 29.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원 금 : 금6,138,774원

인수전이자 : 금6,406,330원

인수후이자 : 금4,061,732원

합 계 : 금16,606,836원

이 율 : 연 23.7%

나. 부친인 피상속인 F은 2018년경 병환으로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및 형제들은 2018. 8. 2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각 1/5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5. 3.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분(1/5) 이외에 적극재산은 없었고, 장기 금융연체 채무만 2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수년간 피상속인 망 F 및 모친 망 G의 병원비, 요양비 등을 모두 부담하는 등의 기여도가 상당하여 모든 형제들이 상속재산지분을 피고에게 포기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것인바, D의 상속분은 특별히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D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고,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한 증거들(진료비납입 확인서)만으로는 피고가 망인(모친 망 G 부양 포함)을 부양하여 특별히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받을 만큼의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D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